2022년 세제개편 후속

# 시행령 개정안 요약

(2023. 1. 19. 입법예고)

## 1 주요 개정 내용

### □ 거짓진술, 직무집행 거부 · 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(국기령)

< **법률**(국기법§88) **개정내용** >

◇ 탈세 방지를 위해 거짓진술, 직무집행 거부·기피 행위 등에 대한 **과태료 상한 인상(최대 2천만원 → 5천만원)**

○ 수입금액 200억원까지는 현행 과태료 금액을 유지

○ 수입금액 200억원 초과부터 100억원 단위로 1,000만원씩 과태료 수준을 인상*하여 최대 5천만원 부과

* 구간별 수입금액 대비 과태료 비율이 0.1%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정비

### □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 합리화 (국기령)

| 구 분 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---|
| 혈 족 | 6촌 이내 | **4촌 이내** |
| 인 척 | 4촌 이내 | **3촌 이내** |
| 그 외 | ▪ 배우자(사실상 혼인관계 포함)<br>▪ 친생자가 타인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| ▪ **(추가) 혼외자의 생부 또는 생모** |

※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도 혈족 6→4촌, 인척 4→3촌 등으로 기 개정('22.12.27. 공포)

### □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 열람 실효성 강화 (국징령)

< **법률**(국징법§109) **개정내용** >

◇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**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**하고, 열람 장소를 전국 세무서로 확대

‣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**임차인 범위는 시행령**에 위임

○ 임대인 **동의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**할 수 있는 임차인 범위를 **1,000만원 초과 보증금을 계약한 임차인**으로 규정

## □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(소득령)

○ **1주택 고령가구**의 **주택 다운사이징 차액**에 대해 **연금계좌**(연금저축, 개인형퇴직연금 등) **추가납입**(누적 한도 1억원) 허용

| 구분 | 내 용 |
|---|---|
| 대 상 자 | **부부 중 1명 60세 이상** & **부부 합산 1주택**자<br>* 종전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 |
| 대상주택 | **기준시가 12억원 이하**인 주택(종전주택 기준) |
| 납입금액 | **종전주택 양도가액에서 신규주택 취득가액**을 **차감**한 금액<br>* 1억원 한도(생애 누적) |
| 납입기간 | **종전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** |
| 사후관리 | **종전주택보다 큰 가액의 주택을 취득**하는 등의 경우에는 **납입액을 연금계좌에서 배제**(5년간 사후관리) |

## □ 인적용역 사업자 단순경비율* 적용 기준 수입금액 상향 (소득령)

*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추계신고 시 수입금액에서 일정비율(단순경비율)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비로 공제하여 소득금액 산출

○ **영세 인적용역 사업자*의 세부담을 완화**하기 위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수입금액을 **2,400만원→3,600만원 미만으로 상향**

* 퀵서비스배달원,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, 학습지방문강사 등

## □ 일시적 2주택 양도세 · 종부세 특례* 처분기한** 연장 (소득령 · 종부세령)

* (양도세)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(최대 80%) 적용
(종부세) 기본공제 12억원, 고령자·장기보유 세액공제(최대 80%) 적용

** (양도세) 종전·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, 그 외 3년, (종부세) 2년

○ 이사 등을 위해 **신규주택 취득**하여 **일시적 2주택**이 된 경우, **1세대 1주택 특례** 요건 중 **종전주택 처분기한**을 **3년**으로 **연장**

※ 적용시기: (양도세) '23.1.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
(종부세) '22년 특례 신청분에도 적용

## □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(소득령)

○ **다주택자**가 **조정대상지역 내 주택**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*를 **배제**하는 **기한**을 '23.5.9.에서 **'24.5.9.까지**로 **1년 연장**

* 중과세율: (2주택) 기본세율+20%p (3주택 이상) 기본세율+30%p,
장기보유특별공제(최대 30%): 미적용

## □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* 임대기간 합산 규정 신설 (소득령)

* 임대료 인상률(5% 이하), 임대기간(직전 계약 1년 6개월 이상 + 상생 계약 2년 이상) 요건 준수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(최대 80%) 2년 거주요건 면제

○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이 **임차인 사정**으로 **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**로서 **기획재정부령**으로 정하는 사유*에 해당 시 **종전·신규 임대기간**을 **합산**하여 **임대기간 요건 충족** 여부 **판정**

* 임차인 퇴거 후 종전계약보다 임대료를 낮춰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계약 체결 등

## □ 신용카드가맹점 등 의무가입대상 업종* 확대 (소득령)

*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,400만원 이상이거나 의료업·변호사업 등 전문업종인 경우 →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

○ **3개 업종**(앰뷸런스 서비스업, 낚시어선업, 스터디카페)을 추가(197개→200개 업종)

## □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* 확대 (소득령)

*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해야하는 업종

○ 현금매출 비중, 건당 현금거래 금액이 높은 **13개 업종***을 **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**에 추가(112개→125개 업종)

* 백화점, 대형마트, 편의점, 서적·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, 육류 소매업, 자동차 중개업, 주차장 운영업, 통신장비 수리업,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등

## □ 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의무 강화(부가령·소득령)

○ 의무발급 대상을 전년도 수입금액 **1억원** → **8,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**('24.7월 시행)

○ 최초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이후 계속하여 **발급 의무 부여**('23.7월 시행)

* 현재는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동

## □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대상·방법 구체화 (소득령, 법인령)

**< 법률**(소득법§163의3, 법인법§121의2 ) **개정내용 >**

◇ **매입자발행계산서* 제도 신설**

* 면세재화 공급자가 부도·폐업 등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 확인을 받아 직접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('23.7월 시행)

▸ 발행대상, 방법 및 절차 등 **시행령 위임**

○ **(대상)** 건당 **공급가액 5만원 이상** 거래

○ **(절차)** 매입자가 **거래사실 확인 신청**(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내) → **공급자 관할세무서**에서 **거래사실 확인** → 매입자가 직접 **계산서 발행**

## 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* 운용가능재산 확대 (조특령)

* 계좌 내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·보유하여 발생한 소득을 200만원(농어민·서민형은 400만원) 한도 내에서 비과세하고, 그 초과분은 9% 분리과세

○ **자금시장 수급여건 개선**을 위하여 **비과세**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**운용가능재산**에 **회사채** 및 K-OTC 주식(중소·중견기업) **추가**

## □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 완화 (조특령)

○ **월세 세액공제**(최대 17%, 연 750만원 한도) 대상이 되는 **주택 가액 기준***을 기준시가 3억원에서 **4억원**으로 상향

* (현행) 국민주택규모(전용면적 85㎡)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

## □ 청년 범위 현실화를 통한 청년 지원 강화 (조특령)

○ 조특법 내 **청년 연령범위 상한**을 29세에서 **34세로 확대 · 통일***

* 통합고용세액공제(신설),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,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등

## □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세부내용 규정 (조특령)

**< 법률**(조특법§104의5) **개정내용 >**

◇ **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신설**(적용기간: '24.1.1.~'25.12.31.)

- **연간 한도 300만원**(세무·회계법인의 경우 600만원), 최소공제액 1만원
- ❶대상 사업자, ❷공제금액은 **시행령으로 위임**

❶ **(대상 사업자)** 상시고용인원 **20인 이하** 소규모 사업자

❷ **(공제금액)** 명세서에 기재된 **상용근로자 수 × 200원**

### □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(조특령)

< **법률**(조특법§99의4) **개정내용** >

◇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**농어촌주택의 소재지 요건 완화**

▸ 농어촌주택 소재지에서 제외되는 도시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**시행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**

○ **기업도시 활성화**를 위해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*은 **농어촌주택 소재지에 포함**

* 인구감소지역으로서 기업도시개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 : 태안군, 영암군, 해남군

### □ 지방 저가주택(종부세) 및 농어촌주택(양도세) 특례* 적용 확대 (종부세령 · 조특령)

* 공시가격 3억원 이하 &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·특별자치시 등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종부세·양도세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 제외

○ **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** 및 **접경지역 모두**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**기획재정부령**으로 **정하는 지역***은 특례 적용

* 지방 저가주택: (현행) 규정없음 → (개정) 연천군·옹진군·강화군 신설
농어촌주택 : (현행) 연천군·옹진군 → (개정) 강화군 추가

## 2 추진일정

□ '23.1.18.(수), 시행령 개정안 발표

□ '23.1.19.(목)~2.3.(금), 입법예고

□ '23.2.21.(화), 국무회의

□ '23.2월말, 공포